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63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4년 2월 5일
- 회 부 일 : 2024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3. 8. 22.)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하고, 대부료·사용료의 최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안 제33조, 제90조)
-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5조 관련 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11. 9.~11. 29.)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토 의견

가.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료·대부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 면적기준 마련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의 편익 증진 및 권익 확대와, 청사 내 청소근로자 관련 휴게제도의 준수, 근로환경 개선 및 건강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사용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
- ※ 대부료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같은 법 제22조 제32조제1항).
- ※ 변상금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제9호).

나. 개정 주요 내용별 세부내용 검토

1)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분할납부 조건 완화(안 제33조, 제90조)

- 안 제33조 및 제90조는 고물가·경기침체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 범위(연 6회)를 연 12회로 확대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금액도 현행 ‘연 100만원 초과’에서 ‘연 50만원 초과’로 하향하며,

※ 본 조례에서는 사용료 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로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사용료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본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참조)

※ 사용료·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일시납부(「공유재산법」 제22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1항)

- 변상금 분할납부 적용 기준금액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대통령령 제33673호, 2023. 8. 22., 일부개정·시행,

(개정이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의 범위’로 조정하며,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일반재산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사용료·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발체)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용료) ① ~ ⑦ (생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 ----- ---- 50만원----- ----- ----- ----- ----- ----- 12회----- -----.
⑨·⑩ (생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50만원

12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변상금) ①

50만원

②~ ⑥ (생략)

〈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변상금 부과 현황(결산기준) 〉 (단위: 천 원)

연 도	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2,876	120,827,156	2,646	110,613,524	230	10,213,632	321	1,614,288
2021	2,878	120,566,136	2,636	108,411,738	242	12,154,398	410	1,699,265
2020	2,041	94,824,897	1,794	79,604,439	247	15,220,458	452	1,093,192
2019	1,370	114,673,602	1,139	104,430,077	231	10,243,525	408	1,029,564
2018	1,386	117,577,111	1,084	92,864,975	302	24,712,136	211	578,579

2)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면적기준 마련(안 별표1)

- 본 개정조례안 별표1의 개정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범적으로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따라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사 내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면적)을 규정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22-115호, 2022.2.14.)

- (의안번호) 제2022 - 115호
- (의안명)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자치단체, 39개 국립대학, 2개 국립대학 법인

〈 청사시설 기준표 반영 예시 〉

구분	현행	개정안(예시)
지 방 청 사 의 표준 설계면적 (각 지자체)	(예시규정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별표])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나. 부속공간 면적 다. 설비관계 면적 라. 공유면적 (신설)	(예시규정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별표])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 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조례 별표1(서울특별시 본청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규정(신설)하려는 것임.

※ 근로자의 휴게 및 휴게시설을 규정한 법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발체)〉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 ~ 라. (생 략) <신 설> 2. 시의회 청사 (표 생략)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u> 2. (현행과 같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8. 18. 시행], 근로자 휴게 및 휴게 시설 설치 관련 규정(발체) 별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신설)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서는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별표1은 서울특별시 본청과 서울특별시의회 청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 재무국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따를 경우, 서울특별시 청사에만 신설 규정이 적용되고 서울특별시의회 청사는 본 개정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 서울특별시의회 청사에 대해서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령상 의무시설 면적을 해당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인사권 외의 조직권, 공유재산의 소유권 등 이외의 권한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음.

- 한편, 관련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기준 면적 등은 2010년에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획일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서는 ‘자치단체 본청·의회 및 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을 신설(2010.8.4.)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특별시의 경우 본청 청사는 127,402㎡, 단체장 집무실은 165.3㎡, 의회 청사는 24,930㎡로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처럼 새로운 시설의 설치 면적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집무실 등 청사 용도별 기준 면적을 충족하여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확장 등을 반영한 청사 기준 면적의 확대 등 청사 기준 면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대부료(사용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 시기는, 같은 내용의 근거 법령(「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2023.8.22.)과 비교하여 약 7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 ※ 새로운 제도의 적용관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

붙임 근로자 휴게 및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발췌)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 가. 전화 상담원
-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 다. 텔레마케터
- 라. 배달원
-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바. 아파트 경비원
- 사. 건물 경비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